



TM

산림인증

KFCC/00-001

한국산림인증제도 임산물생산 · 유통 [CoC] 인증표준



한국산림인증위원회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 02-6393-2758

팩스 : 02-6393-2718

홈페이지 : <https://kfcc.kofpi.or.kr>

문 서 명 : 한국산림인증제도 임산물생산·유통(CoC) 인증표준

문서번호 : KFCC-S-03

승 인 :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승 인 일 : 2015. 12. 22.

시 행 일 : 2015. 12. 22.

목 차

1. 적용범위	1
2. 인용표준	2
3. 용어 및 정의	3
4. 재료/제품의 재료범주 식별	8
4.1 운송(입고) 수준(level)에서의 식별	8
4.2 공급자 수준에서의 식별	9
5. 최소한의 자가검증시스템(DDS) 요구사항	9
5.1 일반 요구사항	9
5.2 정보수집	10
5.3 위험성평가	11
5.4 구체화된 의견 또는 불만	14
5.5 중대한 위험성 공급 관리	14
5.6 시장출하금지	16
6. 연쇄 관리의 방법	16
6.1 일반사항	16
6.2 물리적 분리 방법	16
6.3 퍼센테이지 기반 방법	17
7. 인증비율표시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의사소통	20
7.1 판매/양도 제품과 관련된 문서	20
7.2 로고 및 라벨의 사용	21
8. 최소한의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21
8.1 일반 요구사항	21
8.2 책임과 권한	22
8.3 문서화된 절차서	22
8.4 기록보관	23
8.5 자원관리	24
8.6 검사 및 제어	24
8.7 불만사항	24
8.8 외주업무(하도급)	24
9. CoC에서의 사회,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	25
9.1 적용범위	25
9.2 요구사항	25

임산물생산 · 유통(CoC)인증 표준

제 정 2015. 12. 22.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산림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임산물생산·유통CoC(Chain of Custody)을 실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CoC 요구사항은 조직의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raw material)와 관련된 출처(origin)의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이 표준은 두 개의 CoC 선택사항 즉, 물리적 분리 방법(physical separation method) 및 퍼센테이지 방법(percentage based method)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또한 CoC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 및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08) 또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2004)은 이 표준에서 정의된 경영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 표준은 보건, 안전, 노동 이슈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CoC는 특정한 KFCC 인증비율표시의 정의 즉, “X%의 KFCC 인증” 및 “KFCC 관리된 재료”로 사용되거나 PEFC의 상호인정을 받은 국가산림인증제도의 인증비율표시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표준의 핵심은 일반적인 용어인 “인증, 중립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는 CoC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것이며, 개별 인증비율표시를 위한 이러한 특정 용어의 설명은 이 표준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CoC 실행의 결과로서, 이 표준의 사용자는 인증비율표시 및 관련 라벨 사용을 ISO /IEC 14020:20000에 따라야 한다. CoC 내의 재활용 재료에 대해, 이 표준의 사용자는 ISO/IEC 14021:1999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품 라벨은 조직의 CoC 프로세스에 통합될 수 있는 선택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만약 조직이 제품용(on-product) 또는 제품 외 사용(off-product) 라벨링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라벨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은 CoC 요구사항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써 통합된다.

이 표준은 KFCC 또는 PEFC 상호인정을 받은 국가산림인증제도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3자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적합성평가는 제품인증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ISO/IEC 17065를 따라야 한다.

이 표준에서 사용된 용어 중 “~하여야 한다(shall)”는 의무조항을 나타내며, “~하는 것이 좋다/~하여야 할 것이다(should)”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채택하여 실행할 것을 기대하는 권고조항을 나타낸다. “~해도 된다(may)”는 허용을 표현하는 반면에 “~할 수 있다(can)”는 이 표준에서 사용자의 능력이나 사용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되거나 표기되지 않은 경우, 모두 인용표준의 최신버전(개정안 포함)이 적용된다.

- PEFC ST 2001:2008, PEFC Logo usage rules - Requirements
- PEFC ST 2003:2012,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against the PEFC International Chain of Custody Standard
- ISO/IEC Guide 2: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 ISO 9000:2005, Quality management system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 ISO 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 ISO 14001:2004,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 ISO/IEC 14020:2000,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General principles (KS Q ISO 14020)
- ISO/IEC 14021:1999,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Type II environmental labelling)
- ISO 19011:2011, Guidelines for auditing management systems
- ISO/IEC 17065,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bodies certifying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 EN 643:2001, Paper and board - European list of standard grades of recovered paper and board

3. 용어 및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ISO/IEC Guide 2 와 ISO 9000:2005에 제시된 용어 및 정의를 적용한다.

3.1 인정된 인증서(Accredited certificate)

인정기관의 심볼/로고를 포함하여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3.2 인증 재료(Certified material)

CoC 인증비율표시를 포함되는 원재료(Raw material)

비고 인증 재료에 대한 기준과 공급자는 이 표준의 부속서 1의 KFCC 인증비율표시 정의에서 규정되어 있다. KFCC 인증 재료는 KFCC 인증비율표시와 PEFC의 상호인정을 받은 국가산림인증제도의 CoC 인증비율표시를 갖는 재료를 말한다.

3.3 인증 제품(Certified product)

CoC에 의해 검증된 인증 재료를 포함한 것으로 인증비율이 표시된 제품

3.4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CoC(Chain of custody of forest based products)

조직이 인증 재료의 내용물에 대해 정확하고 검증가능하게 인증비율표시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재료범주(material category)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프로세스

3.5 인증비율표시(Claim)

제품에 포함된 인증 원재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

비고 이 표준에서 인증비율표시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CoC와 관련된 KFCC 인증비율표시(부속서1의 예시 참조)의 사용을 나타낸다.

3.6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

CoC 인증비율표시가 적용되는 기간

3.7 갈등을 야기하는 목재(Conflict timber)

“갈등을 야기하는 목재란 CoC의 안에서 무장단체에 의하여 거래되는 목재이거나 반역 세력, 일반군인, 무력 충돌, 대표자와 관련된 민간 정부나 그 대리인 또는 영속적인 충돌

상황 또는 이러한 충돌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개인에 의해 거래되는 목재를 의미한다. 갈등을 야기하는 목재가 반드시 불법은 아니다.” 또는 목재의 부당한 이용 자체가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3.8 관리된 출처(Controlled sources)

KFCC 자가검증시스템(DDS)의 실행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로부터 온 위험성을 최소화한 재료

3.9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Controversial sources)

아래와 같은 산림 활동이 발생하는 출처의 재료를 의미한다.

- a) 산림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되는 지역, 국가 또는 국제법규를 따르지 않는 경우로 특히 다음과 같은 지역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다른 목적의 이용을 위한 산림전용을 포함하는 산림 운영 및 벌채
 - 환경적·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보호수종 및 멸종위기 수종
 - 산림 노동자와 관련된 보건 및 노동 이슈
 - 원주민들의 재산권, 거주권 및 사용권
 - 제3자의 재산권, 거주권 및 사용권
 - 세금 및 로열티의 지불
- b) 무역과 세관과 관련한 국가의 벌채 관련 법률 미준수
- c) 유전자 변형 산림 기반 식물체(forest based organisms)의 사용
- d) 1차림을 집단단일조림지(forest plantations)로 전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산림을 다른 식생형으로 전용

비고 유전자 변형 산림 기반 식물체로부터 오는 재료를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다.

3.10 고객(Customer)

조직의 제품 구매자 또는 사용자로서, 인증비율표시의 대상이 되는 단일 독립체

비고 고객이란 용어는 후속제품군을 생산하는 CoC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CoC 프로세스에 포함된 내부고객(후가공)을 포함한다.

3.11 자가검증시스템(Due Diligence System, DDS)

실사(이하 검증)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measure)의 체계

3.12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재료(Forest based material)

산림지역에서 오거나 KFCC 산림경영인증을 받은 기타 지역에서부터 오는 원재료로서 그 지역에서 발생된 재활용 재료도 포함

비고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재료는 목재뿐만 아니라 비목재 재료를 포함한다.

3.1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Forest based products)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재료를 포함한 제품

3.14 산림 농장/목재 농장/생산 농장(Forest plantation/timber plantation/productive plantation)

주로 목재나 비목재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도입수종(경우에 따라 재래수종)의 식재나 파종을 통해 조성된 산림 또는 나무가 우거진 토지

비고1 목재 또는 비목재 임산물의 생산을 위해 조성된 도입수종의 모든 임분을 포함한다.

비고2 극소수의 수종 식재, 집약적 정지(整地) (예: 목재수확만을 위한 무육), 열식 조성 또는 동령임분이라는 특징을 가진 재래수종을 식재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비고3 인용어 정의를 내릴 때 국내 임업 용어 및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15 라벨링(Labelling)

라벨의 사용 (제품용 또는 제품 외 사용)

3.16 재료 범주(Material category)

원재료에 따른 특성

비고 이 표준은 세 가지의 재료 범주를 사용한다. (특히 각각 인증비율표시의 세부사항을 정의한 인증 재료, 중립 재료 및 기타 재료)

3.17 중립 재료(Neutral material)

산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재료. 따라서 인증 퍼센테이지의 계산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재료

3.18 조직(Organisation)

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고 제품에 인증비율표시를 부여하는 독립체. 그러한 독립체는 원재료 공급자와 제품의 고객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19 기타 재료(Other material)

인증 재료 이외에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재료

3.20 KFCC 인정 인증서(KFCC recognised certificate)

KFCC가 인정하는 인증서는 다음과 같다.

- a) KFCC가 공시한 인증기관 또는 PEFC Council에 의해 상호인정을 받은 산림경영 제도/표준에 따라 공시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산림경영인증서
- b) KFCC 또는 PEFC가 공시한 재료 범주의 사양과 함께 이 표준에 대해 PEFC가 공시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CoC 인증서
- c) KFCC가 공시한 인증기관 또는 PEFC Council에 의해 상호인정을 받은 CoC 인증 제도/표준에 따라 공시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CoC 인증서

비고 PEFC와 상호인정을 받은 산림인증제도와 CoC 표준은 PEFC Council의 웹사이트 (www.pefc.org)에서 찾을 수 있다.

3.21 물리적 분리(Physical separation)

서로 다른 재료 범주의 다양한 재료/제품을 분리시켜 고객이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재료/제품의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비고 물리적 분리는 조직의 설비에서의 물리적 분리를 포함. 예를 들면, 별도의 설비에서 분리된 구역이나 특정 저장 장소 또는 서로 출처가 다른 범주의 재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표시, 사용 또는 구별되는 표시를 포함

3.22 1차림(Primary forest)

인간활동의 명확한 개입이 없으며 생태학적 프로세스가 크게 방해되어지지 않는 토착종의 산림

비고 인간의 영향이 적은 비목재 임산물의 채취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며 일부 나무가 제거된 지역도 포함 가능하다.

3.23 제품군(Product group)

조직의 CoC에 포함되는 특정 프로세스에서의 제조 또는 거래되는 제품의 구성

비고1 조직은 평행 또는 후속 프로세스의 결과로서 하나 이상의 제품군을 수립할 수 있다.

비고2 CoC 제품군은 CoC 활동의 실행을 위한 하나의 제품군을 포함한다. CoC 실행을 위한 이러한 접근법은 “프로젝트 CoC”로 불린다.

3.24 재활용 재료(Recycled material)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재료로서

- a) 제조과정 중의 폐기물 흐름으로부터 전환되는 것. 공정에서 발생된 재작업, 재가공 또는 스크랩과 같이 공정에서 생성된 재료의 재사용과 이것을 발생시킨 동일한 공정 내에서 회수될 수 있는 재료는 제외된다. 제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톱밥, 칩, 나무껍질 등) 또는 산림 잔여물(나무껍질,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칩, 뿌리 등)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 b) 더 이상 의도된 목적을 위해 이용 될 수 없는 제품의 최종 사용자인 가정이나 상업, 산업 및 기관 시설에 의해 발생된 재료로, 유통과정에서 재료로 되돌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1 “동일한 공정에서 회수 될 수 있는”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공정에서 생긴 재료가 같은 장소의 동일한 공정으로 지속적으로 재투입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패널 보드 생산의 프레스 라인에서 발생한 잔여물이 계속해서 같은 프레스 라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잔여물은 재활용 재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고2 EN 643에 따른 폐지 또는 고지의 등급에 따라 재료 분류는 재활용 재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비고3 용어 정의는 ISO/IEC 14021:1999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3.25 회전 퍼센테이지 계산(Rolling percentage calculation)

제품의 제조 또는 거래 전에 특정 기간 동안에 구매한 투입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인증 퍼센테이지를 계산

3.26 단순 퍼센테이지 계산(Simple percentage calculation)

계산이 이루어지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인증 퍼센테이지의 계산

비고 단순 퍼센테이지 계산의 예는 특정 인쇄 작업동안 구매되고 사용된 재료로부터 인증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인쇄업에 해당된다.

3.27 공급자(Supplier)

투입 재료를 관련한 제품군으로 직접 공급하는 명확하게 식별된 단일 독립체

비고1 재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공급업체 보다는 다른 독립체에 의해 재료가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조직은 소유권을 갖거나 물리적으로 재료를 전달하는 독립체 중에서 하나를 공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재료가 제지 생산업체에 의해 전달되지만 유통업체로부터 재료를 구매하는 인쇄업체는 유통업체 또는 제지 생산업체 중에 하나를 공급자로 고려할 수 있다.

비고2 또한 “공급자”라는 용어는 후속 제품군이 존재하는 조직 내에서의 내부 공급을 포함한다.

4. 재료/제품의 재료범주 식별

4.1 운송(입고) 수준(level)에서의 식별

4.1.1 CoC 제품군에 투입되는 재료의 개별 운송에 대해, 조직은 공급자로부터 구매된 재료 범주를 식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4.1.2 각 재료/제품의 개별 운송과 관련된 문서는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고객으로서 운송을 받는 조직명
- b) 공급자의 식별(identification)
- c) 제품의 식별(identification)
- d) 문서에 표기되는 각 운송 제품의 수량
- e) 운송일자/운송기간/회계기간

추가적으로, 문서는 KFCC 인증비율표시와 함께 제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f) 적용 가능한 경우, 문서에 포함된 각 인증비율표시된 제품을 위해 특히 재료 범주에 관한 공식적 인증비율표시(인증 재료의 퍼센테이지)
- g) 공급자의 CoC 또는 산림인증경영서의 식별자(identifier) 또는 공급자의 인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서

비고1 인증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뿐만 아니라 정확한 문구로 표기된 공식적인 인증비율 표시는 이 표준의 부속서 또는 관련한 산림인증 또는 라벨링 제도에 의해 규정된 기타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비고2 인증서 식별자(identifier)는 숫자 또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될 수 있으며, 보통 “인증서 번호(certification number)”로 표기된다.

비고3 운송문서의 예로는 4.1.2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송장/거래명세서(invoice) 또는 운송증(delivery note) 이 될 수 있다.

4.1.3 조직은 각 운송에 대해 CoC를 실행하기 위해 구매한 재료를 인증재료, 중립 또는 기타 재료로서 인증비율표시가 식별된 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비고 특정 인증비율표시를 위한 인증, 중립 및 기타 재료에 대한 기준은 부속서의 인증비율 표시의 사양이나 관련 산림인증 또는 라벨링 제도에 의해 규정된 다른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4.2 공급자 수준에서의 식별

4.2.1 조직은 인증 재료를 취급하는 모든 공급자로부터 산림경영인증서나 CoC 인증서의 사본 또는 인증서로의 접근이나 공급자의 인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을 요구하여야 한다.

비고 인증 재료의 공급자와 공급자의 인증상태를 확인하는 문서에 대한 기준이 부속서의 인증비율표시의 사양이나 관련 산림인증 또는 라벨링 제도에 의해 규정된 다른 문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4.2.2 조직은 4.2.1항에 따라 얻은 문서의 유효성과 범위를 토대로 인증재료 공급자의 기준과 함께 공급자의 인증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비고 조직은 공급자로부터 얻은 문서뿐만 아니라 KFCC나 다른 조직에 의해 유지되는 공급자의 인증재료 등록부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

5. 최소한의 자가검증시스템(DDS, Due Diligence System) 요구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5.1.1 조직은 이 표준의 다음 요소에 부합하게 구매한 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로부터 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성 관리기술에 기반한 자가검증시스템(DDS)을 운영하여야 한다.

5.1.2 조직의 KFCC CoC에 포함되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투입에 대하여 KFCC 자가검증시스템이 실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예외로 한다.

a) 재활용 재료

b) 국제, 유럽 연합 및 국가 법률에 준해 적용된 CITES의 부속서 I부터 III까지의 목록에 있는 수종으로 만든 재료

5.1.3 조직의 KFCC 자가검증시스템은 이 표준 8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받아야 한다.

5.1.4 조직은 다음의 3단계로 KFCC 자가검증시스템을 실행하여야 한다.

- a) 정보수집
- b) 위험성 평가
- c) 중대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공급 관리

5.1.5 CITES의 부속서 I부터 III까지의 목록에 있는 수종의 원재료를 구매하는 조직은 CITES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국제, 유럽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5.1.6 조직은 산림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적용 가능한 UN, EU 또는 국가의 제재(sanction) 조치에 포함되는 국가로부터 오는 어떤 제한된 산림 기반 재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적용 가능한”이라는 용어는 조직에게 제재 조치가 적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5.1.7 조직은 분쟁을 야기하는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1.8 조직은 KFCC 자가검증시스템에 포함된 제품에 유전자 변형 산림 기반 생물체로부터의 어떤 재료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1.9 조직은 KFCC 자가검증시스템에 포함된 제품에 1차림을 집단단일조림지(forest plantation)로의 전용을 포함하며, 다른 식생형 산림 전용에서 오는 어떠한 재료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5.2 정보수집

5.2.1 KFCC 자가검증시스템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한다. 조직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a) 거래명과 유형을 포함하는 재료/제품의 식별
- b) 적용 가능한 경우, 재료/제품의 학명 및/또는 일반명(common name)을 포함하는 수종의 식별
- c) 재료가 벌채되는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부속국가(sub-national region, 시·도 단위 이하) 지역 및/또는 벌채의 양여 국가

비고1 일반명의 잘못된 사용이 수종의 잘못된 식별의 위험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종의 학명 사용이 요구된다.

비고2 거래명에 포함된 모든 수종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에서 오는 위험성과 동등하다면, 수종의 거래명을 사용했더라도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비고3 만약 한 국가내의 부속 국가 지역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와 관련된 동등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우, 재료 출처의 부속국가 수준의 접근이 요구된다.

비고4 별채의 양여라는 용어는 공공으로 소유된 산림의 정해진 지리학적 구역에 대해 별채의 장기간 및 독점적 계약을 의미한다.

비고5 “국가/지역”이라는 용어는 국가, 부속 국가 지역 또는 재료/제품의 출처의 양여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 조항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5.3 위험성 평가

5.3.1 조직은 KFCC 자가검증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산림을 기반으로 한 투입 재료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로부터 구매한 원재료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예외로 한다.

- a) KFCC 인증서를 가진 공급자에 의한 인증비율표시 정보와 함께 운송되는 인증 재료/제품
- b) KFCC CoC 인증서를 가진 공급자에 의한 인증비율표시 정보와 함께 운송되는 재료 /제품

5.3.2 조직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공급 분류를 “경미한(negligible)” 또는 “중대한(significant)”과 같은 위험성 범주로 나타내야 한다.

5.3.3 조직의 위험성 평가는 다음의 평가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한다.

- a)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준의 공급 또는 원산지 국가/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가능성 (이하 원산지 수준에서의 가능성이라 함)
- b) 공급망 안에서 잠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급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가능성 (이하 공급망 수준에서의 가능성이라 함)

5.3.4 조직은 만약 한 개 또는 두 개 수준이 높은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모든 공급을 “중대한” 위험성으로 분류하기 위해 원산지 수준에서의 가능성과 공급망 수준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조합을 기반으로 하여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1 참고)

높음	공급망 수준에서의 위험성	중대한 위험성	중대한 위험성
낮음		경미한 위험성	중대한 위험성
		원산지 수준에서의 위험성	
		낮음	높음

그림 1 : 위험성 범주

5.3.5 조직은 공급의 위험성 분류를 위해 다음 표의 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 공급망 수준뿐만 아니라 원산지 수준 (표1)에서 “낮은 가능성”의 지표는 5.5항에 설명된 공식적인 위험성 완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성 완화(예 :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의 첫 단계를 위한 선택사항(option)을 기술한다. 따라서 만약, 공급이 원산지 또는 공급망 수준에서 “낮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같은 축의 “높은 가능성”을 무효로 한다.

표 1 : 원산지 수준 및 공급망 수준에서 “낮은 가능성”에 대한 지표 목록 (경미한 위험성)

지표
공급 :
a) KFCC 인증서를 가진 공급자에 의한 인증비율표시 정보와 함께 운송되는 인증 재료/제품
b) KFCC CoC 인증서를 가진 공급자에 의한 인증비율표시 정보와 함께 운송되는 기타 재료/제품
(KFCC 또는 PEFC 상호인정 이외의) 3자 인증기관에 의해 발행된 산림경영 또는 CoC 인증서에 의해 지원된 산림인증제도에 대해 인증된 것으로 선언된 공급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에 의해 포함된 활동에 초점을 맞춘 산림인증제도 이외의 정부 또는 비정부 검증 또는 라이선스 매카니즘에 의해 검증된 공급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식별된 검증 가능한 문서에 의해 확인된 재료 • (무력 충돌이 만연하다고 고려되는 지역을 포함) 목재가 벌채된 국가 및/또는 부속 국가 지역 • 수종의 일반명, 적용 가능하다면 학명뿐만 아니라 제품의 거래명과 유형 • 공급망 안에 포함되는 모든 공급자 • 공급 원산지의 산림경영단위(FMU)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에 대해 언급된 활동과 함께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규정 준수를 나타내는 문서 또는 신뢰할만한 정보
TI CPI(국제 투명성 지수, 부패인식지수)가 50 이하인 국가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고1 유럽연합 목재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른 자가검증시스템에 의한 목재 검증, 감시 조직에 의한 모니터링은 공급의 합법성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비고2 경미한 위험성 식별을 위한 특정 지리적 접근 방법은 5.3.8항에 설명되어 있다.

표 2 : 원산지 수준에서 “높은 가능성”에 대한 지표의 목록

지표
국제적 투명성을 나타내는 실제 국가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가 50 보다 낮다. ¹⁾
무력 충돌이 만연한 국가/지역
낮은 수준의 산림 관리 및 법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지역
재료/제품에 사용된 수종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에 포함된 활동이 만연한 수종으로 알려진 경우

표 3 : 공급망 수준에서 “높은 가능성”에 대한 지표의 목록

지표
위험성평가 매트릭스에서 낮은 위험성에 대한 지표로써 받아들여진 검증시스템에 의해 첫 번째 검증 전에 공급망 단계가 불분명한 경우
위험성평가 매트릭스에서 낮은 위험성에 대한 지표로써 받아들여진 검증시스템에 의해 첫 번째 검증 전에 목재 및 목재제품이 거래되는 국가/지역이 불분명한 경우
제품에 사용된 수종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망 안에 있는 조직으로부터 행하여지는 불법적 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5.3.6 위험성평가는 모든 공급자의 첫 번째 운송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적어도 매년 개정되어야 한다.

5.3.7 위험성평가는 5.2.1항의 특성에 관한 변경이 발생하는 모든 운송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5.3.8 조직은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운송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경미한 위험성을 식별할 수 있다. 이후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조직은 다음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 특정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1) 산림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은 항상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적합한 지표가 존재하고 이를 국제적 투명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PEFC 협의회의 동의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지표들은 ‘CoC’ 가이드 문서에 목록화 될 것이다.

- 지역으로부터 운송되는 수종의 목록

- 공급처가 식별된 지역 및 수종으로 제한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

b) 표 2 및 표 3의 지표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c) 특정 지역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첫 번째 운송 전에 실시되며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개정되어야 한다.

d) 특정 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검토되고, (필요시) 변경된다면 개정되어야 한다.

5.4 구체화된 의견 또는 불만

5.4.1 조직은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공급자 준수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른 측면에 관하여 제3자에 의해 제공된 구체화된 우려를 신속히 조사하고, 타당하다면, 관련 공급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수행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5.4.2 구체화된 문제가 위험성평가(5.3.1항 참조)에서 제외된 경우, 5.3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5 중대한 위험성 공급 관리

5.5.1 일반사항

5.5.1.1 “중대한” 위험성으로 식별된 공급의 경우, 조직은 공급자에게 가능하다면, 조직이 “경미한” 위험성으로 공급을 분류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증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급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조직에게 원재료의 산림경영단위(FMU) 및 “중대한” 위험성 공급과 관련한 전체 공급망을 식별하기 위한 필요 정보를 제공

b) 조직이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이전단계의 공급자뿐 아니라 2자 또는 3자의 공급자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

비고 이러한 절차는 예를 들면 계약서 또는 공급자의 문서화된 자기선언서로 보장될 수 있다.

5.5.1.2 조직은 ‘중대한’ 위험성으로 분류된 공급에 대한 2자 또는 3자 검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증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전체 공급망과 공급 출처인 산림경영단위(FMU)의 식별

b) 관련될 때마다 현장 조사

c) 요구되는 경우, 위험성 완화, 시정 및 예방조치

5.5.2 공급망의 식별

5.5.2.1 조직은 “중대한” 위험성 공급의 모든 공급자로부터 전체 공급망과 공급 출처의 산림경영단위(FMU)에 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5.5.2.2 만약, 공급이 공급망의 첫 번째 단계에서 표 1의 지표에 따라 경미한 위험성으로 검증될 경우, 조직은 전체 공급망을 산림경영단위(FMU)까지 추적을 할 필요는 없다.

5.5.2.3 제출된 정보로 조직은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5.5.3 현장 조사

5.5.3.1 조직 검증 프로그램은 “중대한 위험성”을 가지는 공급자의 현장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는 조직 자체적(2자 감사) 또는 조직을 대신한 3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조직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출처의 재료 원산지에 대한 충분히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문서검토를 통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5.5.3.2 조직은 “중대한” 위험성을 가지는 공급의 원산지 및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적격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5.3.3 조직을 대신하여 3자에 의한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조직은 3자가 5.5.3.2항에서 요구하는 법률에 충분한 지식 및 적격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5.5.3.4 조직은 조직의 검증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되어질 하나의 공급자로부터 “중대한” 위험 공급의 샘플을 결정하여야 한다. 연간 샘플의 크기는 적어도 매년 “중대한” 위험 공급 수의 제곱근으로 하며($y=\sqrt{x}$), 올림하여 정수로 사용한다. 이전 현장 조사가 이 문서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경우, 샘플의 크기는 0.8의 인자에 의하여 감소할 것이다. 예를 들면, $y=0.8 \sqrt{x}$ 로 올림하여 정수로 사용한다.

5.5.3.5 현장 조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공급자 인증비율표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급망 내의 직접 공급자 및 이전 단계의 공급자
- b)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공급 원산지의 산림경영단위(FMU)의 산림소유주/경영자 또는 경영활동에 책임이 있는 다른 당사자

5.5.4 시정 조치

5.5.4.1 조직은 조직의 검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식별된 공급자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5.5.4.2 시정조치의 범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로부터 올 수 있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위험성 크기와 심각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적어도 다음사항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조직에게 공급되어지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에 식별된 위험성을 다루기 위한 요구와 함께 식별된 위험성의 명확한 의사소통
- b)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산림경영단위의 준수 또는 공급망 안에서 정보 흐름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위험성 완화 조치를 규정하도록 공급자에게 요구
- c) 공급자가 적절한 위험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계약 또는 주문을 취소

5.6 시장출하금지(No placement on the market)

5.6.1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로부터 오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조직의 KFCC CoC의 제품그룹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5.6.2 불법적인 출처로부터(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처 3.9(a) 또는 (b)) 온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스러운 목재는 “경미한 위험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서화된 증거가 제공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놓일 수 없다.

6. 연쇄 관리의 방법(Chain of custody method)

6.1 일반사항

6.1.1 CoC를 실행하기 위한 두 개의 방법, 즉, 물리적 분리 방법(physical separation method) 및 퍼센테이지 기반 방법(percentage based method)이 있다. 원재료의 흐름과 프로세스에 따라, 조직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6.2 물리적 분리 방법(Physical separation method)

6.2.1 물리적 분리 방법의 일반 요구사항

6.2.1.1 조직은 전 과정 동안 인증 재료/제품이 기타재료/제품과 혼합되지 않고 인증 재료/제품이 식별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물리적 분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6.2.1.2 물리적 분리 방법을 적용하는 조직은 인증 재료가 제품 생산 모든 단계 또는 거래 프로세스에서 분리되거나 또는 명확하게 식별되는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6.2.1.3 물리적 분리 방법은 다양한 인증재료의 내용물/함량(content)을 가지고 있는 인증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비고 조직은 동일한 퍼센테이지 기반 인증비율표시의 제품을 다른 퍼센테이지 인증비율 표시를 갖거나 그렇지 않은 다른 제품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6.2.2 인증 재료/제품의 분리

6.2.2.1 인증 재료 및 인증 재료 안에서도 다른 내용물이 포함된 인증 제품은 최종제품 제작 과정이나 운송 과정 안에서 명확하게 식별/분리가 되어야 한다. 다음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 a) 생산 및 저장 장소에서의 물리적 분리
- b) 시간에 따른 물리적 분리
- c) 공정 동안 인증 재료/제품의 명확한 식별

6.3 퍼센테이지 기반 방법(Percentage based method)

6.3.1 퍼센테이지 기반 방법의 적용

6.3.1.1 CoC의 퍼센테이지 기반 방법은 인증 재료/제품을 기타 재료 범주와 혼합하는 조직에게 적용한다.

6.3.2 제품군의 정의

6.3.2.1 조직은 특정 제품군에 대한 이 표준의 CoC 프로세스 요구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6.3.2.2 제품군은 (i) 단일 제품 형태 또는 (ii) 같거나 유사한 투입 재료(예 : 수종, 분류(sort) 등)로 구성된 제품군과 연관되어야 한다. 제품군에 투입되는 재료는 같은 측정 단위로 전환될 수 있는 동일한 측정 단위를 가져야 한다.

6.3.2.3 제품군은 하나의 생산 현장을 가진 조직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는 제품과 연관되어야 한다.

비고 이 요구사항은 산림 계약자, 운송, 거래 등과 같이 생산현장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조직이나 프로세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3.3 인증 퍼센테이지의 계산

6.3.3.1 조직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각 제품군과 특정 인증비율표시 기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증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Pc \text{ [%]} = \frac{Vc}{Vc + Vo} \cdot 100$$

Pc : 인증 퍼센테이지

Vc : 인증 재료의 양(Volume)

Vo : 기타 재료의 양(Volume)

비고 인증 재료 및 기타 재료에 추가하여, 특정 인증비율표시를 위한 기준은 계산 공식에 포함되지 않는 중립 재료를 또한 정의한다. 그러므로 재료의 총 양은 인증 재료, 중립 재료, 및 기타 재료의 합이다. ($V_t = V_c + V_o + V_n$: V_t 는 재료의 총 양, V_n 은 중립 재료)

6.3.3.2 조직은 계산에 포함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해 하나의 측정 단위를 기반으로 인증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을 목적으로 하나의 측정 단위를 전환하는 경우, 조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환율과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적합한 전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은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전환율을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3.3.3 구매된 제품이 인증 재료의 일부분만을 포함한다면, 공급자에 의해 인증비율 표시된 퍼센테이지에 상응하는 양이 인증 재료로써 계산공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료의 나머지는 기타 재료로 계산되어야 한다.

6.3.3.4 조직은 다음중의 하나를 인증 퍼센테이지에 계산하여야 한다.

a) 단순 퍼센테이지(simple percentage) (6.3.3.5항) 또는

b) 회전 퍼센테이지(rolling percentage) (6.3.3.6항)

6.3.3.5 만약, 단순 퍼센테이지 계산을 적용하는 조직은 퍼센테이지가 계산된 제품군의 특정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된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인증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6.3.3.6 회전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는 조직의 경우, 조직은 회전 기간에 투입된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제품군과 인증비율표시 기간을 고려하여 인증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회전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는 경우 인증비율표시 기간은 3개월, 재료의 투입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시 3개월의 인증비율표시 기간과 12개월의 재료 투입 기간을 선택한 조직은 이전 12개월 동안 구매된 재료의 양으로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회전 퍼센테이지를 계산할 수 있다.

6.3.4 계산된 퍼센테이지를 최종제품으로 전환

6.3.4.1 평균 퍼센테이지 방법(Average percentage method)

6.3.4.1.1 평균 퍼센테이지 방법을 적용한 조직은 계산이 적용된 제품군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인증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비고 평균 퍼센테이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인증 퍼센테이지에 대한 최소값은 없다. 그러나 인증 퍼센테이지는 언제나 고객에게 전달되는 인증비율표시의 한 부분이다.

산림인증 라벨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값은 별도로 결정해도 된다.

예시 만약 3개월 인증비율표시 동안 계산된 인증 퍼센테이지가 54%라면, 인증비율표시 기간 동안 제품군 내의 모든 제품은 54%의 인증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인증제품으로써 판매/전달될 수 있다(예 54%의 KFCC 인증)

6.3.4.2 볼륨 크레딧 방법(Volume credit method)

6.3.4.2.1 조직은 하나의 인증비율표시에 대해 볼륨 크레딧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료 범주에 관련한 한 가지 이상의 인증비율표시를 가진 하나의 재료 공급을 받는 조직은 볼륨 크레딧을 계산하기 위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인증비율표시를 사용하거나 사용가능한 인증비율표시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 KFCC, PEFC 또는 SFI 인증제도와 같이 두 가지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인증비율표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재료를 운송 받는 조직은 다수의 인증비율표시 (KFCC, PEFC 또는 SFI 인증)을 위한 크레딧 계산을 수립하거나 하나의 운송을 위해 어떠한 인증비율표시를 사용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6.3.4.2.2 조직은 다음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볼륨 크레딧을 계산하여야 한다.

- a) 인증 퍼센테이지 및 최종제품의 양 (6.3.4.2.3항) 또는
- b) 투입 재료 및 투입/산출 비율 (6.3.2.4항)

6.3.4.2.3 인증 퍼센테이지를 사용하는 조직은 관련 인증비율표시 기간의 인증 퍼센테이지에 최종제품의 양을 곱하여 볼륨 크레딧을 계산하여야 한다.

예시 만약 특정 인증비율표시 기간 동안 100톤의 최종제품으로 구성된 제품군의 인증 퍼센테이지가 54%라면, 조직은 최종제품의 54톤이 볼륨 크레딧을 취득한 것과 같다 (100×0.54).

6.3.4.2.4 만약 투입 재료와 최종제품 사이에 검증 가능한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조직은 투입/산출 비율에 인증 재료의 투입 양을 곱하여 볼륨 크레딧을 계산할 수 있다.

예시 만약, 투입 인증 재료가 70m^3 (70% KFCC 인증 100m^3 의 재료)이고 투입/산출 비율이 0.6인 경우(1m^3 의 원목을 제재하여 0.6m^3 의 제재목을 얻는 경우), 조직은 제재목 42m^3 의 볼륨 크레딧을 취득한 것이다.

6.3.4.2.5 조직은 하나의 측정 단위로 크레딧 계정을 생성·관리하고, 이 볼륨 크레딧을 크레딧 계정에 입력하여야 한다. 크레딧 계정은 제품군의 제품별로 또는 동일한 측정 단위가 모든 제품 형태가 적용되는 제품군에 수립되어야 한다.

6.3.4.2.6 조직은 크레딧 계정에서 누적된 총 크레딧 양이 지난 12개월 동안에 입력된 총 크레딧의 총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 생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

최대기간은 평균 제품생산 기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시 만약 (건조 과정을 포함한) 연료용 목재의 평균 생산 기간이 18개월인 경우, 조직은 최대 12개월의 누적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6.3.4.2.7 조직은 크레딧 계정의 볼륨 크레딧을 크레딧 계정에 포함된 최종제품에 분배하여야 한다. 볼륨 크레딧은 인증 제품이 100% 인증 재료를 포함하거나 100% 이하의 인증 재료를 포함하고, 조직의 임계값(threshold)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종제품에 분배되어야 한다. 인증 제품에 포함된 인증 재료의 최종 퍼센테이지를 곱함으로써 인증 제품의 결과는 크레딧 계정에서 차감되어 분배된 크레딧과 같아야 한다.

예시 만약, 조직이 최종제품에 54톤의 볼륨 크레딧을 분배하는 경우, 조직은 100%의 인증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인증제품으로 54톤(100% KFCC 인증)을 팔거나, y%의 인증 재료로서 x톤을 팔 수 있다. (77톤의 최종제품을 '70% KFCC 인증'으로 판매, $77t \times 0.70 = 54t$)

7. 인증비율표시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의사소통

7.1 판매/양도된 제품과 관련된 문서

7.1.1 조직은 고객에게 인증비율표시 제품을 판매 또는 양도를 할 때, CoC 인증서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에 접근(access)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은 고객에게 CoC 인증범위의 변경사항을 알리고 CoC 인증을 오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고 개별 사업장이 그들의 인증상태를 나타내는 별도의 문서(메인 인증서에 언급)를 가지는 복수사업장 인증의 경우, 조직(현장)은 고객에게 메인 인증서와 함께 이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7.1.2 CoC 인증비율표시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하여, 조직은 판매/양도되는 모든 제품의 운송과 관련된 문서의 형태를 식별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인증비율표시를 포함한 문서는 각각의 고객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조직은 문서의 사본을 유지하고 원본이 고객에게 전달된 후 사본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고 각각의 운송과 관련된 문서는 전자매체를 포함한 미디어와 정보를 포함한다.

7.1.3 인증비율표시된 모든 제품의 개별 운송과 관련된 문서들은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고객 식별 정보
- b) 공급자 식별 정보

c) 제품 식별 정보

d) 문서에 표기된 각 제품의 운송 수량

e) 운송 일자/운송 기간/회계 기간

f) (인증 재료의 퍼센테이지를 포함한) 재료 범주의 공식적인 인증비율표시

적용 가능한 경우, 특히 문서에 각 인증비율표시된 제품

g) 공급자의 CoC 식별자(identifier) 또는 공급자의 인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서

비고1 “공식적인 인증비율표시” 이라는 용어는 이 표준의 부속서에 규정된 인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관련 산림인증이나 라벨링 제도에 규정된 기타 문서에서 명시한 정확한 표현의 인증비율표시를 의미한다.

비고2 인증서 식별자는 숫자 또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거나 보통은 “인증서 번호”로 표기된다.

7.2 로고 및 라벨의 사용

7.2.1 CoC 인증과 관련하여 제품(on-product) 또는 제품 외 사용(off-product) 목적으로 로고나 라벨을 사용하는 조직은 로고/라벨의 상표 소유권자 또는 상표 소유권자의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1 조직이 로고/라벨의 사용을 결정한 경우, 로고/라벨 상표 소유권자에 의해 정해진 구체적인 로고/라벨 사용 규칙이 CoC 요구사항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비고2 KFCC 로고 사용의 경우, “승인”은 KFCC에 의해 발행된 유효한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라이선스 조건”은 ‘인증로고 사용표준’에 따른다.

7.2.2 조직은 로고/라벨 상표의 소유권자가 규정한 제품 라벨링을 위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제품에 제품용 라벨을 사용할 것이다.

7.2.3 CoC 인증과 관련한 제품 자체 또는 포장(로고 또는 라벨 없이)에 제품 인증비율 표시를 하는 조직은 항상 공식적인 인증비율표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비율표시를 하는 조직은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비고 “공식적인 인증비율표시” 이라는 용어는 부속서의 인증비율표시 사양 또는 관련한 산림인증 또는 라벨링 제도에 의해 정의된 다른 문서에 언급된 것처럼 정확한 단어를 의미한다.

8. 최소한의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8.1 일반 요구사항

조직은 CoC 프로세스의 정확한 유지 및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표준의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경영시스템은 수행되는 작업의 형태, 범위 및 양에 따라 적절하여야 한다.

비고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08) 또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2004)은 이 표준에서 정의한 경영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 될 수도 있다.

8.2 책임과 권한

8.2.1 일반 책임

8.2.1.1 조직의 경영자는 이 표준의 CoC 요구사항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정의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조직의 방침은 직원, 공급업체,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8.2.1.2 조직의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는 관계없이 조직의 CoC를 위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경영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8.2.1.3 조직의 경영자는 조직의 CoC와 이 표준의 요구사항의 준수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토를 실행하여야 한다.

8.2.2 CoC에 대한 책임과 권한

조직은 CoC유지와 실행을 위하여 개인적 역량 활동에 대하여 식별하고 CoC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적 책임과 권한을 수립하여야 한다.

- a) 원재료 조달과 원산지 식별,
- b) 물리적 분리 또는 퍼센테이지 산출 및 완성 제품으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제품 생산 프로세스,
- c) 제품 판매 및 라벨링,
- d) 기록 유지,
- e) 내부심사 및 부적합 제품의 관리, 그리고
- f) 자가검증시스템(DDS)

비교 위에 주어진 CoC의 책임과 권한의 담당자는 중복이 되어도 된다.

8.3 문서화된 절차서

8.3.1 조직은 CoC를 위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서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조직의 구조, CoC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책임 및 권한
- b) 제품군의 정의를 포함한 제작/운송 과정 안에서 원재료 흐름의 설명
- c) 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하여 CoC 프로세스를 위한 절차
 - 원재료 범주의 식별
 - (물리적 분리를 적용하는 조직) 인증 재료의 물리적 분리
 - (퍼센테이지 기반 방법을 적용하는 조직) 제품군의 정의, 인증 퍼센테이지의 계산, 볼륨 크레딧의 계산, 크레딧 계정의 운영
 - 제품의 판매/운송, 제품의 인증비율표시 및 제품 라벨링
- d) 자가검증시스템(DDS)을 위한 절차
- e) 내부심사를 위한 절차
- f) 불만 해결을 위한 절차

8.4 기록보관

8.4.1 조직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 준수와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CoC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은 적어도 CoC 인증에 포함되는 제품군에 대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a) 공급업체의 산림경영 또는 CoC인증서 또는 인증 재료의 공급업체에 대한 기준을 공급업체가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다른 문서의 사본을 포함하여 인증 재료의 모든 공급 업체 기록
- b) 재료 범주의 인증비율표시를 포함하는 모든 투입 재료 및 투입 재료의 배송과 관련된 문서의 기록
- c) 적용 가능한 경우, 최종제품으로의 퍼센테이지 전환 및 크레딧 계정의 관리를 포함하는 인증 퍼센테이지에 대한 기록들
- d) 재료 범주의 인증비율표시를 포함하는 모든 판매/배송 제품 및 투입 재료의 배송과 관련된 문서의 기록들

- e) 적용 가능한 경우, 위험성 평가 기록 및 “중대한” 위험 공급업체 관리를 포함하는 자가검증시스템(DDS)의 기록
- f) 내부심사, 주기적인 CoC 검토,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기록
- g) 불만사항 해결과 관련 기록

8.4.2 조직은 최소 5년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기록은 전자매체를 포함한 미디어와 정보를 포함한다.

8.5 자원관리

8.5.1 인적 자원/인사

조직은 CoC의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게 대해 적절한 훈련, 교육,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8.5.2 기술 설비

조직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CoC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반구조와 기술 설비를 식별하고, 제공 및 유지하여야 한다.

8.6 검사 및 제어

8.6.1 조직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적어도 매년 내부심사를 수행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8.6.2 내부심사 보고서는 적어도 매년 검토되어야 한다.

비고 내부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은 ISO19011:2002에 제시되어있다.

8.7 불만사항

8.7.1 조직은 CoC와 관련되어 공급자, 고객 및 제3자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8.7.2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조직은 다음을 실행하여야 한다.

- a) 신청자의 불만사항에 대한 인지
- b) 불만사항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 및 검증하고, 불만사항을 결정

- c) 불만사항에 대한 결정과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신청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 d)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보장

8.8 외주업무(하도급)

8.8.1 조직의 CoC는 조직 현장의 내부 또는 외부의 모든 조직 CoC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제품의 제조와 관련한 외주업체의 활동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8.8.2 조직은 만약, 외주업체가 조직으로부터 기타 재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재료를 받고, 외주 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 재료를 다시 조직에게 반환하거나, 조직이 고객에게 제품의 판매 또는 운송하는데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외주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다.

비고1 외주업체의 예는 인쇄된 제품의 재단 및 제본 프로세스의 외주업무와 같이 인쇄된 제품이 외주업체로 배송되고 외주업무 수행 후 다시 인쇄업체로 다시 반환되는 경우이다.

비고2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최종제품을 판매에 관여하는 독립체는 그 자신의 CoC를 실행하도록 요구된다. “조직으로부터 재료를 받음”, “조직에게 재료를 반환”이라는 용어는 조직을 대신하여 외주업체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재료를 받거나, 조직을 대신하여 외주업체가 고객에게 보내는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조직은 재료 구매와 판매, 의사소통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CoC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비고3 외주업무는 한 장소에서 제품군이 제조되어야 하는 6.3.2.3항과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8.8.3 조직은 CoC와 관련한 모든 외주업무 활동에 대하여 조직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8.4 조직은 조직의 재료/제품들이 기타 재료 또는 제품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모든 외주업체와의 서면 계약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8.8.5 조직의 내부심사 프로그램은 외주업체의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9. CoC에서의 사회,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

9.1 적용범위

이 조항은 작업에 있어서 원칙과 권리에 관한 1998년 국제노동기구의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을 기초로 하는 건강, 안전 및 노동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9.2 요구사항

9.2.1 조직은 이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선언을 표명하여야 한다.

9.2.2 조직은 다음을 실행하여야 한다.

- a)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고용주와 집단적으로 협상을 허용
- b) 강제노동의 금지
- c) 법정 최저 나이, 15세 미만, 또는 의무적인 취학 연령의 노동자는 취업 금지
- d) 근로자의 고용 평등과 대우
- e)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부속서 1 : KFCC 인증비율표시의 사양

1. “KFCC 인증” 재료에 사용 가능한 KFCC 인증비율표시의 사양

1.1 도입 :

이 섹션의 사양은 조직이 KFCC 인증 재료에 KFCC 인증비율표시를 사용하기 위하여 CoC를 수립할 때 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1.2 공식적인 인증비율표시

조직은 최종제품에 KFCC 인증 재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사소통 하고자 하는 경우 “x% KFCC 인증” 인증비율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투입 재료의 범주 요구사항

인증 재료 :

- a) 다음중의 하나와 함께 공급자에게 의해 인증비율표시(“x% KFCC 인증”)을 가진 산립 기반의 재료
 - i) KFCC 인정 인증서 또는
 - ii) 공급자가 KFCC 인정 인증서에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 b) 재활용 재료 (“KFCC 인증” 인증비율표시와 함께 운송되는 제품은 제외)

중립 재료 :

산립 기반 이외의 재료

기타 재료 :

다음중의 하나와 함께 공급자에 의해 공급자의 인증비율표시(“KFCC 관리된 출처”)를 포함하는 인증 재료 이외의 산립 기반의 재료

- i) KFCC CoC 인증서 또는
- ii) 공급자가 KFCC CoC 인증에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비고 “KFCC 인정 인증서에 포함되는 공급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라는 용어는 공급자가 KFCC 인정 인증서의 범위에 따라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로 지역적 또는 그룹 산립 경영 인증 및 복수 사업장 CoC 인증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1.4 “KFCC 인증” 인증비율표시의 사용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

조직의 CoC에 포함되는 제품에 재활용 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조직은 ISO14021을 기초로 한 재활용 재료의 포함량을 계산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2. “KFCC 관리된 출처” 재료에 대한 KFCC 인증비율표시의 사양

비고 관리된 재료를 운송하는 자가검증시스템(DDS)은 CoC 표준의 5항에 세부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2.1 도입

이 부분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2.2 공식적인 인증비율표시

조직은 자가검증시스템(DDS)을 실행한 최종제품에 대하여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KFCC 관리된 출처” 인증비율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KFCC 관리된 출처의 투입 재료를 위한 요구사항

인증 재료 :

- a) 다음중의 하나와 함께 공급자에 의해 인증비율표시(“x% KFCC 인증”)을 가진 산림 기반의 재료
 - i) KFCC 인정 인증서 또는
 - ii) 공급자가 KFCC 인정 인증서에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 b) 재활용 재료 (“KFCC 인증” 인증비율표시와 함께 운송되는 제품은 제외)

중립 재료 :

산림 기반 이외의 재료

기타 재료 :

다음중의 하나와 함께 공급자에 의해 공급자의 인증비율표시(“KFCC 관리된 출처”)를 포함하는 인증 재료 이외의 산림 기반의 재료

- i) KFCC CoC 인증서 또는
- ii) 공급자가 KFCC CoC 인증에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비고 “KFCC 인정 인증서에 포함되는 공급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라는 용어는 공급자가 KFCC 인정 인증서의 범위에 따라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로 지역적 또는 그룹 산림경영 인증 및 복수 사업장 CoC 인증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부속서 2 : 복수 사업장 조직의 CoC 표준의 실행

1. 도입

이 부속서의 목적은 여러 현장을 가진 조직이 CoC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평가는 CoC 적합성과 확신을 제공하여 CoC 인증이 운영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복수 사업장 조직의 인증은 일반적으로 소기업 집단의 CoC 인증과 실행을 용납한다.

이 부속서는 단지 다양한 가공 및 유통 현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적용되는 CoC의 요구사항의 실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정의

2.1 복수 사업장 조직은 특정 활동에 대해 계획, 통제 및 관리 할 수 있는 확인된 중앙 기능을 가지는 조직. (일반적으로, 이후부터는 “본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사무실 또는 지사(현장)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2.2 복수 사업장 조직은 특별한 독립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현장은 본사와 법적 또는 계약된 연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CoC에 대해서 본사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본사는 어떠한 현장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정의 실행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3 복수 사업장 조직은 다음을 포함 할 것이다.

- a) 일반적인 소유권, 경영 또는 기타 조직적인 연결로 이루어진 현장을 여러 지점을 가지는 조직 또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조직
- b) CoC 인증의 목적을 위한 기능을 가지며 설립된 독립적 법적인 기업의 그룹 (생산자 그룹)

비고 협회에 소속된 구성원은 “경영 또는 기타 조직적인 연결”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2.4 생산자 그룹은 CoC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일반적으로 작은 독립적 기업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본사는 지속적으로 이 표준을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목적을 위해 추천되거나 그룹 서비스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유통 조직이나 기타 적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독립체가 될 것이다. 본사는 그룹의 하나의 구성원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비고 생산자 그룹 안에서 본사는 “그룹 독립체”로 불릴 수 있고 현장은 “그룹 구성원들”로 불릴 수 있다.

2.5 현장은 조직의 CoC의 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2.6 생산자 그룹은 하나 또는 다음의 경우와 같은 현장이 참여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a) 50인 미만의 직원(정규직)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b) 매출액이 9,000,000 CHF 미만인 경우

2.7 인정기관과 관련된 기관에 의해서 수립된 추가적인 기준은 생산자 그룹을 위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3. 복수 사업장 조직을 위한 적용 가능한 기준

3.1 일반사항

3.1.1 조직의 CoC는 중앙 관리되고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현장 (중앙 관리 기능)은 조직의 내부 감사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 인증기관의 심사에 앞서 프로그램에 따른 감사를 하여야 한다.

3.2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의 책임과 기능

3.2.1 본사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a) 인증기관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인증 프로세스 안에서 복수 사업장 조직을 대표

b) 참여하는 현장의 목록을 포함하여 인증과 인증범위를 위한 신청서 제출

c) 인증기관과의 계약적 관계를 보장

d) 참가하는 현장을 포함하여 인증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해 인증기관에 요청서 제출

e) 전체 조직을 대표해서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CoC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공

f) 이 표준에 부합되도록 CoC의 효과적인 실행과 유지를 위해 모든 현장의 정보와 안내를 제공

- 이 표준의 사본과 이 표준의 요구사항의 실행과 관련된 안내

- KFCC 로고 사용 규칙과 KFCC 로고 사용 규칙의 실행과 관련된 안내

- 복수 사업장 조직의 경영을 위한 본사의 절차

- 인증기관 또는 인정기관의 권리와 관련되어 평가와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현장의 문서와 설비 및 제3자에게 현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근과 관련되어 인증기관과의 계약의 조건

- 복수 사업장 안에서 현장간의 상호 책임의 원칙 설명

- 내부 감사 프로그램, 인증기관의 평가 및 감사와 각 현장에 적용되는 시정 및 예방의 측정 결과
- 현장을 포함하여 인증 범위와 관련된 복수 사업장 인증 및 기타 사항들

비고 “상호 책임”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현장 또는 본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이 모든 현장의 수행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말한다. 복수 사업장의 내부심사 또는 취소가 증가 할 것이다.

g) 현장이 이 표준에 따라서 CoC를 실행하고 유지한다는 헌신을 포함해야 하며 조직적으로 또는 계약으로 연결된 모든 현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사는 모든 현장과 이 표준의 인증범위 안에서 본사가 어떠한 현장도 배제하지 않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시정 또는 예방 측정에 대해 실행과 강제성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문서화된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화된 동의서를 가져야 한다.

h) 복수 사업장 조직의 경영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서 수립

i) 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본사와 현장과 관련된 기록의 보관

j) 내부 심사 프로그램의 운영. 내부 심사프로그램은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심사에 앞서 모든 현장의 현장 내부심사 (본사의 관리부서를 포함)
-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현장의 연간 현장 내부심사 (본사의 관리부서를 포함)
- 인증기관의 인증범위의 확장 심사 프로세스에 앞서 새로운 현장의 현장 내부심사

k) 내부심사 프로그램과 인증기관의 평가 및 심사의 결과 검토를 포함하여 본사와 현장의 적합성 검토의 운영은 적용 가능한 경우, 시정 및 예방의 측정을 수립해야 하며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2.2 현장의 책임과 기능

복수 사업장 조직과 연결된 현장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 a) 이 표준을 준수하는 CoC 요구사항의 실행과 유지
- b) CoC 요구사항과 기타 적용되는 인증 요구사항의 준수와 관련되는 헌신을 포함하여 본사와 계약적인 관계를 시작
- c) 본사나 인증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심사 또는 검토와 관련되는 데이터, 문서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에 효과적으로 응답
- d) 모든 현장의 설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본사에 의해 수행되는 내부심사시 및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심사의 만족적인 실행에 대해 전적인 협조와 도움을 제공
- e) 본사에 의해 수립된 관련 시정 및 예방조치의 실행

4. 복수 사업장 조직에서 이 표준의 실행의 요구사항을 위한 책임의 범위

표준의 요구사항	본사	현장
6.2 CoC 프로세스를 위한 요구사항 - 물리적 분리 방법		해당
6.3 CoC 프로세스를 위한 요구사항 - 퍼센테이지 기반 방법		해당
8. 최소한의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8.2 책임과 권한	해당	해당
8.2.1 일반 책임	해당	해당
8.2.2 CoC를 위한 책임과 권한	해당 (d와 e)	해당
8.3 문서화된 절차서	해당 (a, e 및 f)	해당
8.4 기록 보관	해당 (f와 g)	해당
8.5 자원 관리	해당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1 인적 자원/인사		
8.5.2 기술 설비		
8.6 검사 및 제어	해당	해당
8.7 불만사항	해당	해당